

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」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국



2024년 8월 19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95 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고기간, 외부 평가위원 구성 등 채용 관련 절차”를 “사전협의 기한 및 내용(방식), 공고기간, 시험단계, 외부전문가 비율 조정 등 채용절차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명확한”을 “2년 이하로 명확한”으로, “경우”를 “경우(단, 「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년 초과 가능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 외부 전문위원 구성 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49조의 별표7 제3호가목과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7] 징계양정기준(제49조 관련)

| 징 계 사 유 | 징 계 기 준 | | | | | | 비 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|
| | 견책 ~ 감봉 | 감봉 ~ 정직 | 정직 ~ 강등 | 강등 ~ 해임 | 해임 ~ 파면 | 파면 | |
| 3. 품위유지의무 위반 | | | | | | | |
| 가. 음주운전 |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따름 | | | | | | |

| 징 계 사 유 | 징 계 기 준 | | | | | | 비 고 |
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견책 ~ 감봉 | 감봉 ~ 정직 | 정직 ~ 강등 | 강등 ~ 해임 | 해임 ~ 파면 | 파면 | |
| 3. 품위유지의무 위반 | | | | | | | |
| 다. 무면허 운전 | | | | | | | 무면허 음주운전 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 |
| 1) 면허 미 취득,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| | ○ | | | | | |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 관 부 서 | | 경 영 기 획 실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| 직 위 성 명 | 경 영 기 획 실 장 이 현 동 |
| | 직 위 성 명 | 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 |
| 자 | 담당자 성명 (전 화) | 문 원 미 (3 9 0 - 7 6 4 1) |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3조의1(비정규직 채용절차 간소화 및 긴급채용) ① 비정규직 채용 시 다음 각호의 경우 시와 협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<u>공고기간, 외부 평가위원 구성 등 채용 관련 절차를 간소화</u>할 수 있다.</p> <p>1.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<u>명확한 일시·간헐적 업무인 경우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<u>채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험 공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3개월 미만 : 3일 이상</u></p> <p>2. <u>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: 5일 이상</u></p> <p>3. <u>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: 7일 이상</u></p> <p>③ (생략)</p> | <p>제3조의1(비정규직 채용절차 간소화 및 긴급채용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사전협의 기한 및 내용(방식), 공고기간, 시험단계, 외부전문가 비율 조정 등 채용절차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----- <u>2년 이하로 명확한 ----- 경우(단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년 초과 가능)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|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|
| [별표 7] 징계양정기준(제49조 관련) | | | | | | | |
| 징 계 사 유 | 징 계 기 준 | | | | | | 비 고 |
| | 견책 ~ 감봉 | 감봉 ~ 정직 | 정직 ~ 강등 | 강등 ~ 해임 | 해임 ~ 파면 | 파면 | |
| 3. 품위유지의무 위반 | | | | | | | |
| 가. 음주운전 | | | | | | | |
| 1)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| ○ | | | | | | 신분을 속인 경우에 는 가중하 여 징계 |
| 2) 음주운전 2회 | | ○ | | | | | |
| 3) 음주운전 3회 | | | | | ○ | | |
| 4)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| | | ○ | | | | |
| 5)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| | ○ | | | | | |
| 6) 음주운전 교통사고 (음주정도에 따라 가감) | | ○ | ○ | | | | |
| 7)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(음주정도에 따라 가감) | | | | | ○ | | |
| 8)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.03%이상 4회 | ○ | | | | | | |
| 9)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.03%이상 5회 | | ○ | | | | | |
| 10)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.03%이상 6회 | | | ○ | | | | |
| 11) 운전직의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1회 | | | ○ | | | | |
| 12) 운전직의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2회 | | | | | ○ | | |
| 개 정 안 | | | | | | | |
| [별표 7] 징계양정기준(제49조 관련) | | | | | | | |
| 징 계 사 유 | 징 계 기 준 | | | | | | 비 고 |
| | 견책 ~ 감봉 | 감봉 ~ 정직 | 정직 ~ 강등 | 강등 ~ 해임 | 해임 ~ 파면 | 파면 | |
| 3. 품위유지의무 위반 | | | | | | | |
| 가. 음주운전 |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따름 | | | | | | |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[별표 7] 징계양정기준(제49조 관련) | | | | | | | |
| 징 계 사 유 | 징 계 기 준 | | | | | | 비 고 |
| | 견책 ~ 감봉 | 감봉 ~ 정직 | 정직 ~ 강등 | 강등 ~ 해임 | 해임 ~ 파면 | 파면 | |
| 3. 품위유지의무 위반 | | | | | | | |
| 다. 무면허 운전 | | | | | | | |
| 1)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 | | | ○ | | | | 무면허 음주운전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 |
| 2) 면허 미 취득,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| | ○ | | | | | |
| 개 정 안 | | | | | | | |
| [별표 7] 징계양정기준(제49조 관련) | | | | | | | |
| 징 계 사 유 | 징 계 기 준 | | | | | | 비 고 |
| | 견책 ~ 감봉 | 감봉 ~ 정직 | 정직 ~ 강등 | 강등 ~ 해임 | 해임 ~ 파면 | 파면 | |
| 3. 품위유지의무 위반 | | | | | | | |
| 다. 무면허 운전 | | | | | | | |
| 1) 면허 미 취득,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| | ○ | | | | | 무면허 음주운전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 |